

“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3월 4일 나득수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 2011년 3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10) 상정
-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10)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위원회 나 득 수 의원)

주 문

-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별지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한다.

제안이유

- 2010년 11월 10일과 25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대형유통재벌의 횡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 지난해 11월 10일 통과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인 점,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 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등은 생존권 위협의 여지가 있으며,

- 2010년 11월 25일 통과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기습개점’이 횡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의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과 지역공동체를 지켜 가야한다고 생각함.
- 따라서,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부천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전면 재개정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결의안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 속기록 참고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

2010년 11월 10일과 25일 대형유통업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 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법안 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으나,

실제 대형마트는 4KM, SSM은 1KM, 골목슈퍼는 300M가 상권영향구역이라 할 수 있지만, 현행 500M는 상권영향구역에 못 미치는 규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된 법안의 500M 보호구역은 실효성이 없다.

또한, 500M 이외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간판 바뀌달기, 주말 도둑개점, 다른 매장으로 속여 오픈하기 등의 편법 출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업조정신청을 기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개점할 경우 이미 개점을 마친 상황에서는 사업조정신청의 효과가 그만큼 약해질 수 있고, 법적 강제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 또한 허점이라 할 것이며, 법 발효 전 개점하려 했으나 상인들과의 마찰로 공사 중단된 SSM을 둘러싸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영업시간,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해야 할 벌칙조항 역시 미비하여 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부천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중소기업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면 재개정 되어야 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를 1KM로 재개정하라.

1. 증대규모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을 500M 이외지역에서도 규제 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면 재개정하라.

1. 현행 권고사항인 사업조정심의제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적 이행 수단으로 재개정 하라.

1. 법에 대한 강제적 이행을 위해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강화하라.

2011년 3월 일